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외부전문가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 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06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유 인 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외부전문가의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2
※ 참고자료	9
1. 주식매수선택권 개요	9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범계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13.
3. 회부연월일 : 2024.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로 기업의 설립이나 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에 해당하는 자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일부 직종이나 관련 면허를 가진 자를 열거하고 있음.

그렇지만 이러한 현행법령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벤처기업의 설립과 성장에 기여하였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자문역으로 와도 스톡옵션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외부전문가 범위를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3호).

Ⅲ. 검토의견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외부전문가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개정안은 외부전문가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제외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 -----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② ~ ⑤ (생략)	<u>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이란 회사가 임·직원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회사의 성장을 주식 소유의 형태로 임직원 등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주식에 근거한 보상(stock-based compensation)의 특징을 가지며, 주식을 소유한 임직원 등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성과에 연동하여 부여하는 보상(performance-based compensation)의 특징 또한 가짐¹⁾.

주식매수선택권제도는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행사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때에만 이 권리를 행사하여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만큼 이득을 보기 때문에, 회사의 발전에 많은 공헌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임직원에게 장기인센티브 보수제도로서의 장점이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임직원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어 생산성을

1) 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 2024.7.

향상시키며,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장점이 있음²⁾.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에 일반주식회사와 상장회사로 구분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임직원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비상장벤처기업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임직원이 아닌 외부전문가에게 허용되는 등 부여대상, 부여한도, 행사가격 등에서 「상법」에 비해 완화되어 규정되어 있음.

[표 1] 주식매수선택권 비교

구 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법」	
	제16조의3~6	제340조의2~4	제542조의3
적용 대상	▪ 비상장벤처기업	▪ 주식회사	▪ 상장 주식회사 *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부여 대상	▪ 임·직원 ▪ 인수(총 주식 30%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외부 전문가	▪ 임·직원 *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 임·직원 ▪ 관계회사의 임·직원
부여 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50%이내 - 외부전문가는 10% 이내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 발행주식총수의 15% 이내
행사 가격	▪ (신주발행)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 단, 임직원에게 한하여 시가 미만 권면액 이상 금액 가능 ▪ (자기주식) 시가 이상	▪ (신주발행) 부여일 기준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 (자기주식) 시가 이상	
세제 혜택	▪ (비과세특례) 행사이익 연간 2억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 * 「조특법」 제16조의2	-	▪ (비과세특례)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

2)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23판, 박영사, 2020, p.815

구 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법」	
	제16조의3~6	제340조의2~4	제542조의3
	▪ (납부특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5년 분할 납부 가능 * 「조특법」 제16조의3 ▪ (과세특례) 3년간 행사가액이 합계 5억원 이하일 경우 행사 이익에 대해 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 선택 가능 * 「조특법」 제16조의4		우 적용 ▪ (납부특례) 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소득세 5년 분할 납부 가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³⁾ 및 시행규칙⁴⁾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1.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5.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① 영 제11조의3제4항제3호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전문자격을 말한다.

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6.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7.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8.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수의사
9.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약사 또는 한약사
10.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1.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직 종사자

② 영 제11조의3제4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2.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③ 영 제11조의3제4항제5호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를 말한다.

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포지티브 방식),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아닌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네거티브 방식).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는 벤처기업의 성장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제외되는 자가 아니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⁵⁾, 아울러 이를 부여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⁶⁾를 통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발행주식

-
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 영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① 제16조의3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총수의 10% 이내에서 부여하도록 제한⁷⁾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
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네거티브 방식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않은 자인데도 대통령령에서 제외되는 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의 취
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도 주식매수선택권 대
상 외부전문가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필요시 새로운 전문가 유형을
추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현행법령으로도 특별히 배제되는 전
문가 유형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임.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
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문 의 처
02) 6788-5464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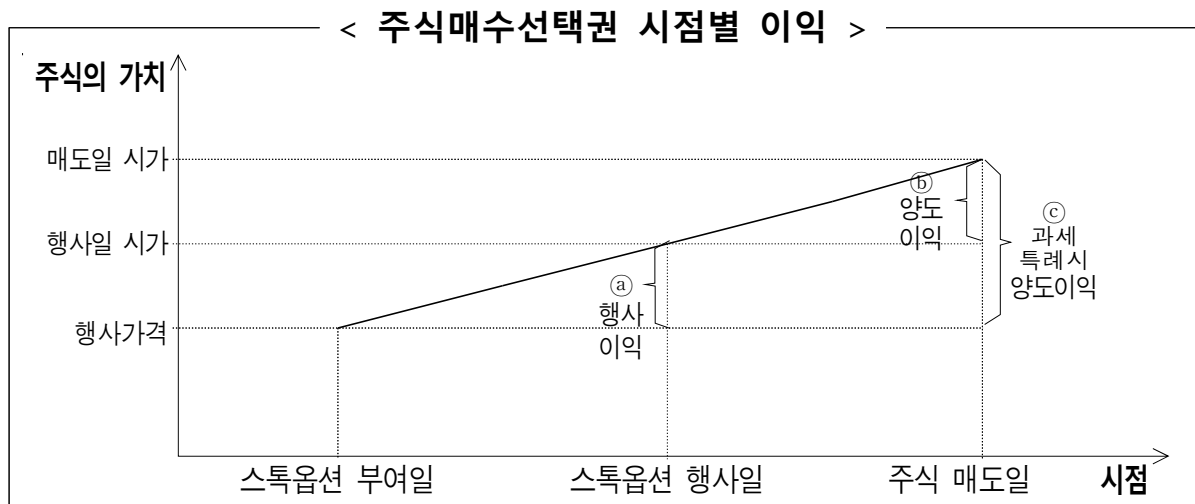
1

주식매수선택권 개요

□ **정의** :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제도

- 주식의 가치(시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 이익 발생
- 기업 성장에 따른 가치 상승을 부여대상과 공유함으로써 우수인력 확보,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 재직을 유도

* 도입연도 : 상장회사('97년), 비상장 벤처기업('98년), 일반 주식회사('99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주식매수선택권의 기능

-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임직원의 생산성을 제고
- 회사의 의사결정 시 임직원 등과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
 - 회사와 주주, 경영진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잠재적인 주주를 다수 확보하여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수단으로도 기능

(단위 : 명, %)

구 분	'18	'19	'20	'21	'22	'23	계
임직원	5,352 (96.4)	6,351 (96.2)	8,710 (96.1)	12,418 (94.2)	13,391 (94.5)	10,120 (97.3)	56,342 (95.5)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18 (0.3)	11 (0.2)	11 (0.1)	139 (1.0)	34 (0.2)	73 (0.7)	286 (0.5)
외부전문가	162 (2.9)	225 (3.4)	265 (2.9)	595 (4.5)	732 (5.2)	193 (1.9)	2172 (3.7)
기타	19 (0.4)	16 (0.2)	82 (0.9)	36 (0.3)	21 (0.1)	9 (0.1)	183 (0.3)
합계	5,551 (100.0)	6,603 (100.0)	9,068 (100.0)	13,188 (100.0)	14,178 (100.0)	10,395 (100.0)	58,983 (100.0)

주: 기타는 주식매수선택권 신고 시 자료가 누락된 경우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